

감 사 보 고 서

- 부패방지국 · 청렴연수원 종합감사 -

2021. 9.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대상부서 현황	3
III. 감사결과	7
1. 감사결과 총괄	7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10
[부패방지업무 분야]	
(1)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통보)	11
(2) 부패영향평가 제외법령 지정 부적정(시정)	17
(3)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항 처리결과 청렴포털 등록 및 관리 미흡(시정, 통보)	22
(4)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항 처리결과 청렴포털 등록 및 관리 미흡(시정, 통보)	34
(5) 불공정 · 불합리한 사규 정비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잘못된 업무 관행 개선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통보[모범사례])	51
(6)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통한 공직사회 청렴성 제고에 기여(통보[모범사례])	55
(7) 적시성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으로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에 기여(통보[모범사례])	59
[예산집행 등 공통업무 분야]	
(8) 업무 인계인수 시 문서 ‘인계인수시스템’을 통한 관리 부적정(통보) ...	64
(9)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주의)	68
(10) 특근매식비 부적정 지급(시정, 주의)	72

(11) 출장식비 부적정 지급(시정, 주의)	75
(12)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규정 미준수(주의, 주의)	78
(13) 일상감사를 거치지 않은 계약추진(주의)	81
(14) 청렴연수원 자료실 도서 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통보) ..	84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2021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부패방지국과 청렴연수원의 조직과 주요 사업 수행, 예산·회계집행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부패방지국과 청렴연수원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향상 및 주요 사업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부패방지국과 청렴연수원이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업무처리에 대한 적법성 및 규정준수에 관한 사항,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예산낭비 요인 유무 확인, 지난 감사결과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불합리한 업무처리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3.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감사 대상부서인 부패방지국과 청렴연수원에 2021. 5. 28. 공문을 발송하여 감사 대상 자료를 2021. 6. 4.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며, 6. 9.부터 7. 6.까지 20일간 감사반장인 감사담당관 포함 감사인원 5명을 투입하여, 제출된 자료와 추가 요구자료 검토, 문서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확인된 부적정 및 개선사항과 관련하여 2021. 7. 22.부터 8. 4. 까지 업무처리 경위와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받는 등 주요 지적·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대상 부서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고 2021. 9. 17.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감사대상부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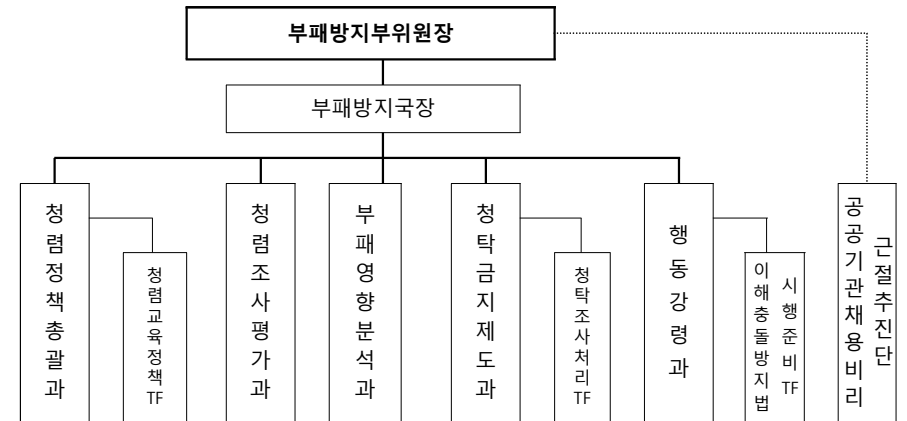
1. 임무와 기능

부패방지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패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관련 제도 운영 및 신고 처리, 행동강령 제도 운영 및 신고 처리 등을 하고 있다. 한편, 청렴연수원은 반부패·청렴교육 시행, 콘텐츠 개발, 청렴교육강사 양성·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조직과 인력 현황

부패방지국은 [그림 1]과 같이 2021년 6월 말 현재 1국, 5과, 1단, 3T/F로 구성되어 있다. 총 정원은 55명¹⁾이며, 현재 인원은 49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1] 부패방지국 조직도 및 정·현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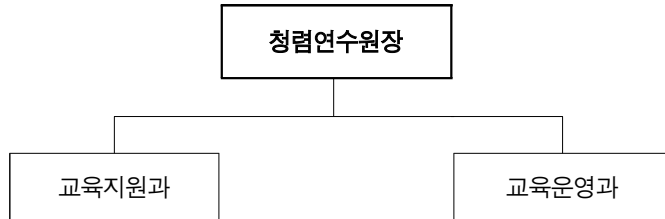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계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전문 경력관	특정직
정원	55	1	2	3	5	20	24	-	-
현원	49	1	2	3	3	16	24	-	-

1)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은 별도정원으로 운용

청렴연수원은 [그림 2]와 같이 2021년 6월 말 현재 2과로 구성되어 있다. 총 정원은 25명이며, 현재 인원은 21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2] 청렴연수원 조직도 및 정·현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전문 경력관	시간 선택제
정원	25	-	1	0	2	2	18	1	1
현원	21	-	1	0	1	2	15	1	1

3. 예산 현황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부패방지국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20억 8천 6백만 원, 청탁금지법 업무담당자 교육 1억 4천 9백만원 등 [표 1]과 같이 31억 1천 9백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2021년도 부패방지국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예산(A)	2021년 예산(B)	증감	
			차이(C=B-A)	증감률(C/A)
합계	3,169	3,119	-50	-1.6%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2,572	2,520	-52	-2%
상용임금	19	38	19	100%
일용임금	14	9	-5	-36%
일반수용비	75	115	40	53%
임차료	12	13	1	8%
국내여비	13	12	-1	85%
국외업무여비	-	12	12	8%
사업추진비	19	17	-2	-11%
일반연구비	2,415	2,296	-119	-5%
고용부담금	5	8	3	60%
공직자행동강령운영	90	90	-	-
일반수용비	32	32	-	-
임차료	6	8	2	33.3%
유류비	2	2	-	-
국내여비	48	46	-2	-4.1%
사업추진비	2	2	-	-
청탁금지제도운영	507	509	2	3.9
상용임금	32	64	32	100
일용임금	26	-	-26	-100
일반수용비	201	202	1	5.0
임차료	22	22	-	-

국내여비	109	104	-5	-4.6
사업추진비	10	9	-1	-10.0
일반연구비	40	40	-	-
포상금	56	56	-	-
고용부담금	11	12	1	9.1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청렴연수원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일반용역비 5억 8천 5백만 원, 일반수용비 5억 5천 2백만 원 등 [표 2]과 같이 18억 3천 5백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2021년도 청렴연수원 세출예산

구분	2020년 예산(A)	2021년 예산(B)	증감	
			차이(C=B-A)	증감률(C/A)
합계	1,662	1,835	173	10.4%
청렴교육 및 의식 확산	1,530	1,757	227	14.8
일반수용비	557	552	-5	-0.9
공공요금및제세	71	71	0	0
피복비	6	6	0	0
임차료	29	29	0	0
시설장비유지비	120	92	-28	-23.3
일반용역비	350	585	235	67.1
관리용역비	30	39	9	30.0
사업추진비	15	14	-1	-6.7
일반연구비	255	248	-7	-2.7
실시설계비	-	40	40	-
자산취득비	97	81	-16	-16.5
반부패기술지원(ODA)	132	78	-54	-40.9
일반수용비	34	37	3	8.8
임차료	9	3	-6	-66.7
국외업무여비	76	32	-44	-57.9
사업추진비	13	6	-7	-53.8

(단위: 백만원, %)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이번 감사결과, [표 2]와 같이 총 16건의 부적정 및 개선 사항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주의요구를 하거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3건의 모범사례는 우리 위원회 전 부서에 전파·공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표 2] 감사결과 현황

구분	합계	시정	주의	통보	통보 (모범사례)
건수	16	5	6	5	3

감사결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부패방지업무 분야

- ①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타 공공기관 대비 부패방지교육 이수율이 낮은 '기초자치단체', '국·공립대학', '소규모 공직유관단체'의 부패방지교육 실적 등이 기초자치단체 합동평가, 감독기관의 감사·평가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는 한편, 부패방지교육 실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교육이 부진한 공공기관에게는 특별교육 실시, 점검 결과 언론 공표 등 부패방지교육 이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통보)
- ② (부패영향평가 제외법령 지정 부적정) 기존에 부패영향평가 제외법령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정책 환경 등의 변화로 부패유발요인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법령 지정을 취소하고, 그 밖에 폐지된 법령은 제외법령 지정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시의성 있게 제외법령을 정비하는 방안 마련(시정)
- ③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항 처리결과 청렴포털 등록 및 관리 미흡) 청렴포털 시스템 상 누락·지연 입력되어 있는 정보를 수정하고(시정), 향후 청렴포털 시스템에 정보 입력이 누락되거나 지연 입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청렴포털 시스템 사용자 교육 강화, 주기적 점검 실시 등

의 관리방안 마련(통보)

- ④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항 처리결과 청렴포털 등록 및 관리 미흡) 청렴포털 시스템 상 누락·지연 입력되어 있는 정보를 수정하고(시정), 향후 청렴포털 시스템에 정보 입력이 누락되거나 지연 입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청렴포털 시스템 사용자 교육 강화, 주기적 점검 실시 등의 관리방안 마련(통보)
- ⑤ (불합리한 사규 정비를 통한 공공기관 투명성 제고에 기여) 부패방지권의 위법 개정을 통하여 위원회 직권으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후,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사규를 집중 평가하여 공공기관의 잘못된 업무관행 개선에 기여(통보 [모범사례])
- ⑥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통한 청렴도 제고에 기여) 기존 반부패법령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규제 등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여 청렴수준 제고 및 공직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통보[모범사례])
- ⑦ (적시성 있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실태 점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LH사태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LH직원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했다는 의혹이 발생하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채용비리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공공기관 투명한 채용절차 확립에 기여(통보[모범사례])

나. 예산집행 등 공통업무 분야

- ① (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통한 인계인수 부적정) 업무 인계·인수 시 실제 인계·인수·입회와 함께 온나라 ‘인계인수시스템’을 통해서도 완료되어야 하지만, 시스템상 총 85건 중 30건(35.3%)이 미완료
- 앞으로는 인계·인수시스템 상으로 완료토록 조치(통보)

- ②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 다과 구입 등은 업무추진비로 사용해야 함에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는 등 예산과목에 부합하지 않게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예산과목에 부합하지 않게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주의요구)
- ③ (특근매식비 부적정 지급) 특근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 외 2시간 이상 근무해야 지급 가능하지만 2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출장식비와 중복 지급한 사례(26건)
- 잘못 지급한 165천원에 대해서는 환수하고(시정), 특근매식비 지급 시간 철저 확인(주의요구)
- ④ (출장식비 부적정 지급) 출장 중 업무추진비 또는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장 식비를 감액 지급해야 함에도 감액되지 않은 사례
- 중복지급된 83,240원은 반납하고(시정), 출장비 정산 시 업무추진비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 바람(주의요구)
- ⑤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규정 미준수) 업추비 50만원 이상을 집행할 때는 관련 품의서에 주된 상대방의 소속성명 기재해야 하나 이를 누락하거나(5건), 업무추진비 사용영수증에 실명 서명이 누락된 사례
-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50만원 이상 집행 시 주된 상대방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고(주의요구), 업무추진비 사용 후 사용자가 영수증에 실명으로 서명할 것(주의요구)
- ⑥ (일상감사를 거치지 않고 계약추진) 계약 추진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2천만원 이상 인쇄 등의 계약은 일상감사를 감사담당관에게 의뢰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계약을 추진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일상감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주의요구)
- ⑦ (청렴연수원 자료실 도서관리 미흡) 자료실에 대출대장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도서 현황 파악과 대출이력 확인 등이 어려워 분실·훼손 시 변상 등의 조치가 곤란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출대장 등을 마련하고 정기적 재물조사 실시하는 방안 마련(통보)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별도 첨부자료 참조(뒷면부터)

국 민 권 의 위 원 회

통 보

제 목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소 관 부 서 부패방지국 ○○○○○○과

조 치 부 서 부패방지국 ○○○○○○과

내 용

1. 업무 개요

○○○○○○과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81조의2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부패방지교육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면서,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매년 부패방지교육 실시결과를 제출받는 등 공공기관의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 제1항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되 교육대상자가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등인 경우에는 대면(對面) 교육이 포함되어야 하고, 전년도 부패방지교육 실시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부패방지국 ○○○○○○과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 제2항과 제3항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 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필

요한 경우 수시 점검 실시 가능), 그 점검결과를 아래와 같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도교육청평가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과의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이수율은 매년 증가('18년 91.2% → '19년 93.1% → '20년 93.3%)하고 있는 추세이나, [표 1]과 같이 27개 공공기관은 '20년 부패방지교육 이수율이 0%로 매우 저조하며, [표 2]와 같이 부패방지교육 실적을 제출하지 않아 부패방지교육 이수 실적이 파악조차 안 되는 공공기관도 62개에 달한다.

[표 1] '20년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0% 공공기관

연번	기관분류	기관명	연번	기관분류	기관명
1	기초자치단체	○○남도 ○○시	15	공직유관단체	○○○○○장학회
2	지방의회(기초)	○○○○시 ○○구의회	16	공직유관단체	○○○○지역 자활센터
3	지방의회(기초)	○○남도 ○○군 의회	17	공직유관단체	○○○○노인인력개발 센터
4	지방의회(기초)	○○남도 ○○군 의회	18	공직유관단체	○○○○건강가정지원 센터
5	지방의회(기초)	○○남도 ○○군 의회	19	공직유관단체	○○○○○○도 장애인체육회
6	지방의회(기초)	○○남도 ○○군 의회	20	공직유관단체	재단법인○○
7	공직유관단체	○○○○○○연구원	21	공직유관단체	○○○○○○파크

8	공직유관단체	전국○○○○협회	22	공직유관단체	○○장학재단
9	공직유관단체	재단법인○○○장학회	23	공직유관단체	○○문화예술재단
10	공직유관단체	○○○○문화재단	24	공직유관단체	재단법인○○○ 인재육성재단
11	공직유관단체	○○○○교육원	25	공직유관단체	○○시체육회
12	공직유관단체	○○○여성가족청소년재단	26	공직유관단체	○○○○○○○○(주)
13	공직유관단체	(재)○○○인재양성교육진흥원	27	공직유관단체	(재)○○○○관광재단
14	공직유관단체	○○○○○ ○○○(주)			

[표 2] '20년 부패방지교육 실적 미제출 공공기관

연번	기관명	기관분류	연번	기관명	기관분류
1	○○○○의회	지방의회 (광역)	32	(재)○○○시설관리단	공직유관단체
2	○○○○○○시의회		33	(재)○○○○시설관리단	
3	○○도 ○○시의회	지방의회 (기초)	34	○○○○파트너스(주)	
4	○○도 ○○시의회		35	재단법인 ○○문화재단	
5	○○도 ○○시의회		36	재단법인 ○○복지재단	
6	○○도 ○○시의회		37	재단법인 ○○시장학재단	
7	○○도 ○○시의회		38	○○시 체육회	
8	○○남도 ○○시의회		39	○○시 장애인체육회	
9	○○북도 ○○시의회		40	○○군 체육회	
10	○○북도 ○○군의회		41	○○○○정책연구원	
11	○○광역시 ○○군의회		42	한국○○연구원*	
12	○○광역시 ○○의회		43	한국○○○○진흥원*	
13	○○광역시 ○○구의회		44	○○과학기술○○원	
14	○○광역시 ○○구의회		45	○○연구원*	
15	○○특별시 ○○구의회*		46	○○광역시○○○○재단	
16	○○특별시 ○○구의회		47	재단법인○○○○○○추진위원회	
17	○○특별시 ○○구의회		48	(재)○○○시청소년육성재단	
18	○○특별시 ○○구의회*		49	○○○엔터테인먼트	
19	○○광역시 ○○의회		50	○○투자펀드(주)	
20	○○광역시 ○○군의회		51	○○문화관광재단	
21	○○남도 ○○군의회*		52	○○군 인재육성재단*	
22	○○남도 ○○시의회		53	○○○○○○○○관리주식회사	
23	○○남도 ○○군의회*		54	○○축제·관광재단	
24	○○북도 ○○시의회*		55	○○인재육성재단(평진원)	

25	○○남도 ○○군의회		56	(재)○○시청소년재단	
26	○○남도 ○○군의회*		57	○○○문화원	
27	○○북도 ○○군의회		58	○○북도 장애인체육회	
28	○○남도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59	(재)○○평생교육진흥원	
29	○○○○대학교	국공립대학	60	재단법인○○○○사회서비스원	
30	○○복지재단	공직유관단체	61	재단법인○○○문화재단	
31	○○○○복지재단		62	재단법인○○○가족여성연구원	

* '19년, '20 연속 미제출 기관(10개 공공기관)

한편, 부패방지교육 이수율이 0% 이거나 실적을 미제출한 위 기관들은 대부분 부패방지교육 실적 등이 부패방지 시책평가, 공기업 경영평가 등에 반영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국·공립대학, 소규모 공직유관단체로 이들 기관의 부패방지교육 이수율은 부패방지교육 실적 등이 각종 평가에 반영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표 3] 기관유형별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및 평가 반영 현황

구분	이수율			평가 반영 현황
	18년	19년	20년	
전 체	91.2%	93.1%	93.3%	-
중앙행정기관	95.1%	95.7%	95.9%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
광역자치단체	91.3%	92.6%	90.1%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
기초자치단체	84.9%	86.7%	86.4%	일부 기초자치단체(226개 중 42개 지자체, '21년 기준)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
지방의회	-	84.3%	83.7%	평가 미반영
교육자치단체	97.2%	96.1%	97.1%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
국·공립대학	-	63.2%	50.1%	일부 국·공립대학(45개 중 16개 국·공립대, '21년 기준)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
공직유관단체	91.1%	92.6%	93.7%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일부 공직유관단체), 경영실적평가 반영(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반영(지방공기업)

「부패방지권익위법」이 공공기관의 부패방지교육을 의무화 한 것은 공직자의 청렴성 및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여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과는 반부패·청렴정책의 총괄부서로 공공기관의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 후 그 점검결과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제3항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하는 한편 부패방지교육 이수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부패방지교육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부패방지교육 실적 등에 대한 평가 반영이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일부 공직유관단체에 그치고 있어('21년부터 지방의회 의원, 사무처 직원의 부패방지교육 이수실적은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 반영), 각종 평가에서 부패방지교육 실적 등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국·공립대학, 소규모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부패방지교육 이수율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에는 '성희롱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 「가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과 달리 부패방지교육이 부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별도의 관리·감독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반영한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계부서 의견 ○○○○○○과는 부패방지교육의 이행력 제고를 위하여 교육 이수율 부진기관, 신규 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부패방지교육 기관별 점검결과 언론 등에 공표’, ‘부패방지교육 부실 공공기관 대상 특별교육 명령’ 등의 내용을 포함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홍성국 의원안)이 국회 계류 중이므로 해당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유사 입법사례, 관련 근거 등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타 공공기관 대비 부패방지교육 이수율이 저조한 ‘기초자치단체’, ‘국·공립대학’, ‘소규모 공직유관단체’의 부패방지교육 실적 등이 기초자치단체 합동평가, 감독기관의 감사·평가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는 한편, 부패방지교육 실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교육이 부실한 공공기관에게는 특별교육 실시, 점검결과 언론 공표 등 부패방지교육 이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패영향평가 제외법령 지정 부적정

소 관 부 서 부패방지국 ○○○○○○과

조 치 부 서 부패방지국 ○○○○○○과

내 용

1. 업무 개요

○○○○○○○과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해당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3조제1호에 따르면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안 등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3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하고자 하는 법령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패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법령의 시의성 제고 및 정책환경 변화 등 제외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외법령을 지

정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하도록 되어 있다²⁾.

◆ 부패영향평가대상 제외법령

1. 헌법기관이 행하는 사항에 대한 법령
2. 국가보안, 예비군·민방위, 국토·통일, 국호·국기·연호, 전례·국경일 등 국가의 안보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령
3. 직제, 후생복지, 제안제도, 급여·수당·문서·관인·차량 관리 등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기능 및 내부운영에 관한 법령
4. 폐지법령, 알기 쉬운 법령 등 정부정책결정에 따라 동시에 일괄 개정되는 법령
5. 그 밖에 고도의 정책추진사항 및 부패유발요인과 명백히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법령

‘부패영향평가’ 제도는 법령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사전·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장치로서 원칙적으로 모든 법령을 부패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법령 제·개정 절차 단축 및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하여 ○○○○○○과는 부패유발요인과 명백히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법령을 부패영향평가 대상의 제외법령으로 지정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³⁾.

따라서 ○○○○○○과는 부패영향평가 제외법령을 지정할 때에는 연례·답습적인 제외법령 지정은 지양하고, 기존에 부패영향평가 제외법령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정책 환경 등의 변화로 부패유발요인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제외법령 지정을 취소하고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고, 그 밖에 폐지된 법령은 제외법령 지정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시의성 있게 제외법령을 정비하여 부패영향평가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2) 2019. 10. 1.부터 2021. 5. 31. 사이에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이 4차례 개정(2019. 10. 8., 2020. 5. 11., 2020. 9. 14., 2020. 11. 9.)되었으나, 부패영향평가 제외법령 관련 조항은 2019. 10. 8. 규정된 후 개정 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2020. 5. 1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조문별 개정이유서

그런데 ○○○○○○과가 2021. 4. 30.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809개 부패영향평가 제외법령 가운데에는 [표 1]과 같이 감사원 감사지적 분야 소관 법령,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소관 법령, 부패영향평가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법령 등과 같이 부패유발요인과 명백히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법령이 제외법령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표 2]와 같이 이미 법령이 폐지되어 제외법령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제외법령으로 지정된 사례가 있었다.

[표 1] 부패유발요인 관련성을 명백히 부정하기 어려운 평가 제외법령

연번	제외법령명	감사·제도개선 사항 등
1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8조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경우에는 개인 명의로 출원할 수 없음에도 ○○청 소속 직원은 직무발명을 개인 명의로 특허 출원(2014. 4., 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기관 기관운영감사)
2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 -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제10조 등에 따르면 공관장은 명예영사의 영사업무 처리실적, 주요활동 등에 대한 공관장 평가 등이 포함된 활동실적 평가서를 작성하여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는 등 명예영사 활동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재외국민 보호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2018. 5.,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3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 권익위 제도개선 사항 -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공항 귀빈실 사용대상자를 규정하면서 ‘그밖에 공항공사 사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선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고, 위임을 받은 공항공사 사규에서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공항 귀빈실 사용대상자를 무분별하게 확대(2018. 12., 공항 귀빈실 사용의 특혜 방지 방안)
4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 부패영향평가 평가기준에 해당되는 사항 - 부패영향평가 기준 중 ‘재정누수 가능성’ 관련하여 체크리스트에서 장학금 지원제도의 경우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공정하고 구체적인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검토사항으로 제시(「부패영향평가 지침(2020년)」)

[표 2] 부패영향평가 제외법령 중 폐지된 법령 현황

연번	법령명	폐지 일시	소관부처
1	사법시험법	2009. 5. 28.	법무부
2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2016. 5. 29.	법무부
3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2016. 11. 29.	법무부
4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2021. 1. 1.	법무부
5	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이율에관한규정	2019. 5. 21.	법무부
6	치안행정협의회규정	2020. 12. 31.	경찰청
7	관세공무원 복제 규칙	2017. 3. 10.	관세청
8	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	2019. 6. 11.	국방부
9	아전군사령부령	2019. 1. 1.	국방부
10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칼린에 대한 덤프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공포한 날(2013. 8. 22.) 로부터 3년 효력	기획재정부
11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프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공포한 날(2015. 8. 19.) 로부터 5년 효력	기획재정부
12	일본산 두꺼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프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공포한 날(2014. 12. 30.) 로부터 3년 효력	기획재정부
13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프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공포한 날(2013. 12. 20.) 로부터 3년 효력	기획재정부
14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2019. 10. 15.	문화체육관광부
15	공무국외여행규정	2016. 11. 22.	인사혁신처
16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2017. 4. 13.	인사혁신처
17	공무원증 규칙	2017. 4. 13.	인사혁신처
18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2017. 4. 13.	인사혁신처
19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등에관한규정	2016. 11. 22.	인사혁신처
20	강릉시 설치에 관한 법률	2019. 8. 20.	행정안전부
21	거제군 설치에 관한 법률	2019. 8. 20.	행정안전부
22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2010. 10. 1.	행정안전부

관계부서 의견 ○○○○○○과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과는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3조의2 제1항 제2호(국가 안보 및 유지·관리) 및 제3호(행정기관의 기능·내부운영 등에 관한 법령)를 기준으로 제외법령을 지정하고 있으며 제외법령으로 지정되더라도 정책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현행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기존에 부패영향평가 제외법령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정책 환경 등의 변화로 부패유발요인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법령 지정을 취소하시기 바라며, 그 밖에 폐지된 법령은 제외법령 지정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시의성 있게 제외법령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항 처리결과 청렴포털 등록 및 관리
미흡

소 관 부 서 부패방지국 ○○○○○○○과, 심사보호국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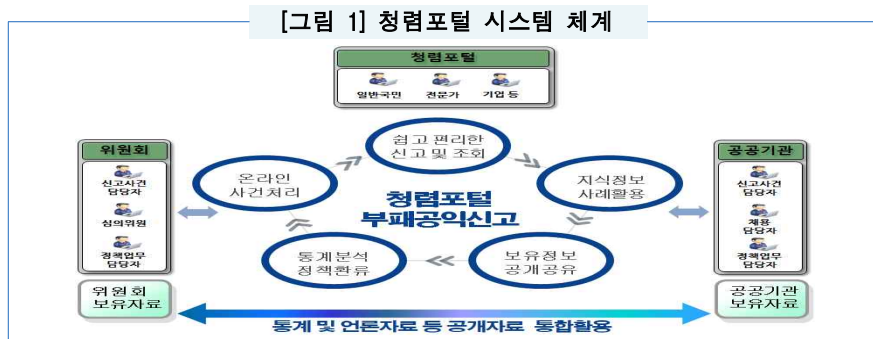
조 치 부 서 부패방지국 ○○○○○○○과, 심사보호국 ○○○○○과

내 용

1. 업무 개요

부패방지국 ○○○○○○○과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7조, 제9조, 제13조 및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1조, 제21조, 제32조 등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심사보호국 ○○○○○과는 기존에 여러 시스템으로 분산되어 운영되어온 부패방지 정보시스템을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 제고, 업무담당자의 업무 효율성 개선 등을 위하여 [그림 1], [표 1]과 같이 부패방지 종합시스템인 ‘청렴포털’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표 1] 청렴포털 시스템 구축 추진경과

기간	단계별 주요사업	예산
'17. 5. ~ '17. 10.	청렴포털 BPR/ISP(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 계획)	4.4억원
'18. 6. ~ '19. 1.	(1단계) 국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편(간편 신고)하고, 위원회 신고사건 접수, 처리 및 안전상정 기능 등 전면 보완	42억원
'19. 6. ~ '20. 2.	(2단계) 신고를 위원회뿐만 아니라 각급기관에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각급기관이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급	32억원
'20. 6. ~ '21. 2.	(3단계) 상담내용, 신고내용, 청렴도 조사, 언론 등 다양한 정보를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능 탑재	46억원

국민들은 [그림 2]와 같이 청렴포털을 이용하여 부정청탁 등을 신고할 수 있고 처리결과 통지방식을 청렴포털, 이메일, 우편 중 하나 또는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건 담당자는 [그림 3]과 같이 청렴포털에서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기재하여 ‘신고자 통지(이첩·송부 사건의 경우 조사결과 통지)’를 입력함으로써 ‘청렴포털 시스템’ 상 사건처리가 완료된다.

[그림 2] 청렴포털 신고 화면(신고자 입력)

* 신고분야	간편신고(부패유형자동분류)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선택-		* 휴대전화번호	-선택-
직업	-선택-	근무처		
이메일 주소		@	직접입력	
* 주소	주소검색 최근 사용한 주소 불러오기			
추가 상세정보를 입력해 주십시오.				
처리결과 통지방식	☒ 청렴포털 ☐ 이메일 ☐ 우편 * 선택하신 방식으로 기간연장, 조사결과 등 신고 처리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통지방식으로 이메일을 선택하는 경우 이메일 입력은 필수입니다.			
진행단계 알림방식	☒ 문자메시지 ☐ 이메일 * 선택하신 통지방식으로 신고 진행사항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알림을 위해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림방식으로 이메일을 선택하는 경우 이메일 입력은 필수입니다.			

[그림 3] 청렴포털 신고자 통지 화면(조사관 입력)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 제21조, 제23조, 제33조, 제35조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6조에 따르면 ○○○○○○과장은 신고를 이첩, 송부 또는 종결하는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렴포털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통보 방법은 같은 지침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문서 등으로 통지하되 청렴포털로 접수된 신고사건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거나 청렴포털에 등록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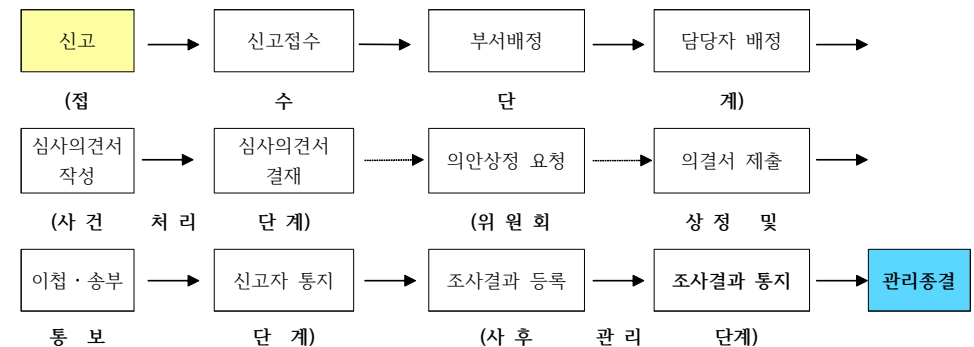
한편, 「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지침」 제1조에 따르면 청렴포털은 부패방지, 공익신고, 부정청탁 등 방지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되었으며,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국민

권익위원회는 청렴포털의 총괄운영기관으로서 청렴포털의 운영·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운영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제10조 따르면 청렴포털이 지원하지 않는 업무를 제외한 업무는 청렴포털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정보의 입력 또는 등록 등 청렴포털을 통한 업무처리는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하여야 하고, 제1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보를 입력 또는 등록한 후 그 정보를 원시자료 등과 대조하여 누락 및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청렴포털’ 시스템을 이용하여 부패방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반부패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garbage in, garbage out), 이를 위해서는 청렴포털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에 대한 적절한 품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와 ○○○○과는 [그림 4]와 같이 신고사항 처리 각 단계별(접수→사건처리→위원회 상정·통보→사후관리)로 청렴포털을 통하여 신고사건을 처리하여야 하며 당해 업무 담당자는 청렴포털에 처리사항을 즉시 입력하여 청렴포털 시스템 상에서 업무처리 정보가 누락되거나 ‘실제 사건 처리일’과 ‘청렴포털 시스템 상 사건처리일’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청렴포털에 입력 또는 등록되어있는 정보를 점검하여 누락 등 오류가 있는 정보들을 정비하는 등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림 4] 청렴포털 업무처리 프로세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과가 감사 기간(2019. 10. 1. ~ 2021. 5. 31.) 동안 처리한 사건 중 사건처리를 완료한 후 신고자에게 문서로 처리결과를 통보 하였음에도 [별표 1]과 같이 청렴포털 시스템에서 신고자 통지 처리를 ‘누락’ 하거나 [별표 2]와 같이 청렴포털 시스템에 신고자 통지 처리를 ‘지연 입력’ 하여 ‘사건 처리일’과 ‘신고자 통지일’ 차이가 100일 이상 나는 사건이 존재 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별표 1] 사건들은 사건 처리가 완료되었음에도 청렴포털 시스템 상에서는 [그림 5]와 같이 ‘심사중’으로 조회되고 있어 신고자들에게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별표 1]과 [별표 2] 사건들은 실제 사건처리 현황이 청렴포털 시스템 상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는 등 정보의 완결성·정확성 부족으로 이를 활용한 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저하되어 부패방지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연계한 분석 등을 목적으로 구축된 청렴 포털 시스템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

[그림 5] ‘신고자 통지’가 누락된 사건의 청렴포털 조회 화면

관계부서 의견 ○○○○○○○과는 부서원들을 대상으로 청렴포털 시스템 입력과 병행하여 신고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렴포털 시스템 처리가 누락된 신고사건이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비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과는 이견 없이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청렴포털 사용자 교육 강화, 신고자 통지가 누락된 사건에 대한 정기적인 관련부서 통보, 청렴포털 시스템 개선 추진 등 청렴포털 상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정보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 및 ○○○○○과장은 청렴포털 시스템상 누락되어 있거나 지연 입력되어 있는 정보를 실제 사건처리 현황에 맞게 수정하도록 하고(시정), 향후 청렴포털 시스템에 정보 입력이 누락되거나

지연 입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청렴포털 시스템 사용자 교육 강화,
 청렴포털 시스템 등록 정보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실시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1] 청렴포털에서 '신고자 통지' 입력 누락 현황

연번	접수번호	처리일자	심사의견	통지 입력일	통보방식
1	2019청탁*****	2019-12-23	이첩	-	청렴포털
2	2019청탁*****	2019-12-23	이첩	-	청렴포털
3	2019청탁*****	2019-12-05	이첩	-	청렴포털
4	2019청탁*****	2019-12-30	이첩	-	청렴포털
5	2019청탁*****	2019-12-30	이첩	-	청렴포털
6	2019청탁*****	2020-04-06	이첩	-	청렴포털
7	2019청탁*****	2019-12-27	이첩	-	청렴포털
8	2019청탁*****	2020-04-06	이첩	-	청렴포털
9	2019청탁*****	2020-06-22	이첩	-	청렴포털
10	2019청탁*****	2020-02-26	이첩	-	청렴포털
11	2019청탁*****	2020-02-26	이첩	-	청렴포털
12	2020청탁*****	2020-04-06	이첩	-	청렴포털
13	2020청탁*****	2020-04-06	이첩	-	청렴포털
14	2020청탁*****	2020-04-06	이첩	-	청렴포털
15	2020청탁*****	2020-07-02	이첩	-	청렴포털
16	2020청탁*****	2020-09-21	이첩	-	청렴포털
17	2020이의(청탁)*****	2020-08-24	이첩	-	청렴포털
18	2020이의(청탁)*****	2020-09-29	이첩	-	청렴포털, 이메일
19	2020이의(청탁)*****	2020-09-29	이첩	-	청렴포털, 이메일
20	2020이의(청탁)*****	2020-09-29	이첩	-	청렴포털, 이메일
21	2020이의(청탁)*****	2020-09-29	이첩	-	청렴포털, 이메일
22	2020이의(청탁)*****	2020-09-29	이첩	-	청렴포털, 이메일
23	2020이의(청탁)*****	2020-09-29	이첩	-	청렴포털, 이메일
24	2020이의(청탁)*****	2020-09-29	이첩	-	청렴포털, 이메일
25	2020이의(청탁)*****	2020-09-29	이첩	-	청렴포털, 이메일
26	2020이의(청탁)*****	2020-09-29	이첩	-	청렴포털, 이메일
27	2020이의(청탁)*****	2020-09-29	이첩	-	청렴포털, 이메일
28	2020이의(청탁)*****	2020-09-29	이첩	-	청렴포털, 이메일
29	2020이의(청탁)*****	2020-09-29	이첩	-	청렴포털, 이메일
30	2020이의(청탁)*****	2020-09-29	이첩	-	청렴포털, 이메일
31	2020이의(청탁)*****	2020-09-29	이첩	-	청렴포털, 이메일
32	2020이의(청탁)*****	2020-09-29	이첩	-	청렴포털, 이메일
33	2020이의(청탁)*****	2020-09-29	이첩	-	청렴포털, 이메일
34	2020이의(청탁)*****	2020-09-29	이첩	-	청렴포털, 이메일
35	2020이의(청탁)*****	2020-09-29	이첩	-	청렴포털, 이메일
36	2020청탁*****	2021-02-22	이첩	-	청렴포털

37	2021청탁*****	2021-04-26	이첩	-	청렴포털, 이메일
38	2019청탁*****	2020-03-26	송부	-	청렴포털
39	2019청탁*****	2020-04-07	송부	-	청렴포털
40	2019청탁*****	2020-04-07	송부	-	청렴포털
41	2019청탁*****	2020-03-02	송부	-	청렴포털
42	2020청탁*****	2020-04-08	송부	-	청렴포털
43	2020청탁*****	2020-04-08	송부	-	청렴포털
44	2020청탁*****	2020-06-11	송부	-	청렴포털
45	2020청탁*****	2020-06-03	송부	-	청렴포털
46	2020청탁*****	2020-06-11	송부	-	청렴포털
47	2020청탁*****	2020-06-11	송부	-	청렴포털
48	2020청탁*****	2020-07-02	송부	-	청렴포털
49	2020청탁*****	2020-07-03	송부	-	청렴포털
50	2020청탁*****	2020-08-10	송부	-	청렴포털
51	2020청탁*****	2020-09-09	송부	-	청렴포털
52	2020청탁*****	2020-09-23	송부	-	청렴포털
53	2020청탁*****	2020-10-12	송부	-	청렴포털
54	2020청탁*****	2020-10-20	송부	-	청렴포털
55	2020청탁*****	2021-01-18	송부	-	청렴포털
56	2020청탁*****	2021-02-26	송부	-	청렴포털
57	2020청탁*****	2021-02-04	송부	-	청렴포털
58	2020청탁*****	2021-02-08	송부	-	청렴포털
59	2019청탁*****	2020-03-02	종결	-	청렴포털
60	2019청탁*****	2020-03-02	종결	-	청렴포털
61	2019청탁*****	2020-02-26	종결	-	청렴포털
62	2019청탁*****	2020-03-04	종결	-	청렴포털
63	2019청탁*****	2020-04-09	종결	-	청렴포털
64	2019청탁*****	2020-04-09	종결	-	청렴포털
65	2019청탁*****	2020-04-09	종결	-	청렴포털
66	2019청탁*****	2020-04-28	종결	-	청렴포털
67	2019청탁*****	2020-05-26	종결	-	청렴포털
68	2020청탁*****	2020-05-21	종결	-	청렴포털
69	2020청탁*****	2020-03-23	종결	-	청렴포털
70	2020청탁*****	2020-03-04	종결	-	청렴포털
71	2020청탁*****	2020-03-23	종결	-	청렴포털
72	2020청탁*****	2020-06-05	종결	-	청렴포털
73	2020청탁*****	2020-04-09	종결	-	청렴포털
74	2020청탁*****	2020-04-28	종결	-	청렴포털

75	2020청탁*****	2020-06-03	종결	-	청렴포털
76	2020청탁*****	2020-04-28	종결	-	청렴포털
77	2020청탁*****	2020-07-30	종결	-	청렴포털
78	2020청탁*****	2020-07-13	종결	-	청렴포털
79	2020청탁*****	2020-07-13	종결	-	청렴포털
80	2020청탁*****	2020-06-19	종결	-	청렴포털
81	2020청탁*****	2020-08-10	종결	-	청렴포털
82	2020청탁*****	2020-08-10	종결	-	청렴포털
83	2020청탁*****	2020-08-10	종결	-	청렴포털
84	2020청탁*****	2020-08-10	종결	-	청렴포털
85	2020청탁*****	2020-08-10	종결	-	청렴포털
86	2020청탁*****	2020-08-10	종결	-	청렴포털
87	2020청탁*****	2020-08-10	종결	-	청렴포털
88	2020청탁*****	2020-08-13	종결	-	청렴포털
89	2020청탁*****	2020-08-10	종결	-	청렴포털
90	2020청탁*****	2020-08-10	종결	-	청렴포털
91	2020청탁*****	2020-08-10	종결	-	청렴포털
92	2020청탁*****	2020-07-03	종결	-	청렴포털
93	2020청탁*****	2020-07-08	종결	-	청렴포털
94	2020청탁*****	2020-08-10	종결	-	청렴포털
95	2020청탁*****	2020-08-24	종결	-	청렴포털
96	2020청탁*****	2020-09-25	종결	-	청렴포털
97	2020청탁*****	2020-09-25	종결	-	청렴포털
98	2020청탁*****	2020-08-10	종결	-	청렴포털
99	2020청탁*****	2020-08-10	종결	-	청렴포털
100	2020청탁*****	2020-08-10	종결	-	청렴포털
101	2020청탁*****	2020-08-10	종결	-	청렴포털
102	2020청탁*****	2020-09-23	종결	-	청렴포털
103	2020청탁*****	2020-10-20	종결	-	청렴포털
104	2020청탁*****	2020-10-16	종결	-	청렴포털
105	2020청탁*****	2020-10-16	종결	-	청렴포털
106	2020청탁*****	2021-01-29	종결	-	청렴포털
107	2020청탁*****	2020-11-04	종결	-	청렴포털
108	2020청탁*****	2020-10-16	종결	-	청렴포털
109	2020청탁*****	2020-10-16	종결	-	청렴포털
110	2020청탁*****	2020-10-27	종결	-	청렴포털
111	2020청탁*****	2020-10-27	종결	-	청렴포털
112	2020청탁*****	2020-10-27	종결	-	청렴포털

113	2020청탁*****	2020-10-27	종결	-	청렴포털
114	2020청탁*****	2020-11-04	종결	-	청렴포털
115	2020이의(청탁)*****	2020-11-13	종결	-	청렴포털
116	2020이의(청탁)*****	2020-11-13	종결	-	청렴포털
117	2020청탁*****	2020-10-27	종결	-	청렴포털
118	2020청탁*****	2020-12-31	종결	-	청렴포털
119	2020청탁*****	2021-01-11	종결	-	청렴포털
120	2020이의(청탁)*****	2020-11-13	종결	-	청렴포털
121	2020이의(청탁)*****	2021-01-20	종결	-	청렴포털
122	2020청탁*****	2021-04-05	종결	-	청렴포털
123	2020청탁*****	2021-04-05	종결	-	청렴포털
124	2020청탁*****	2021-02-17	종결	-	청렴포털
125	2021청탁*****	2021-04-05	종결	-	청렴포털
126	2021청탁*****	2021-03-09	종결	-	청렴포털
127	2021청탁*****	2021-03-09	종결	-	청렴포털
128	2021청탁*****	2021-03-11	종결	-	청렴포털
129	2021청탁*****	2021-04-05	종결	-	청렴포털
130	2021청탁*****	2021-04-05	종결	-	청렴포털
131	2021청탁*****	2021-04-05	종결	-	청렴포털
132	2021청탁*****	2021-04-05	종결	-	청렴포털
133	2021청탁*****	2021-04-05	종결	-	청렴포털, 이메일
134	2021청탁*****	2021-04-05	종결	-	청렴포털, 이메일

[별표 2] 사건 처리일과 청렴포털상 신고자 통지 입력일간 100일 이상 차이발생 현황

연번	접수번호	사건 처리일자	신고자 통지 입력일	처리일부터 입력일까지 기간	심사의견	통보방식
1	2019청탁*****	2019-11-06	2021-01-06	427일	이첩	청렴포털
2	2019청탁*****	2019-10-17	2020-12-17	427일	이첩	청렴포털
3	2019청탁*****	2019-10-04	2020-11-25	418일	송부	청렴포털
4	2019청탁*****	2019-10-04	2020-11-25	418일	송부	청렴포털
5	2019청탁*****	2020-03-23	2021-05-11	414일	이첩	청렴포털
6	2019청탁*****	2019-11-27	2020-12-08	377일	송부	청렴포털
7	2019청탁*****	2020-05-01	2021-03-19	322일	송부	청렴포털
8	2019청탁*****	2019-12-30	2020-10-12	287일	송부	청렴포털
9	2020청탁*****	2020-06-01	2021-03-03	275일	송부	청렴포털
10	2019청탁*****	2020-01-21	2020-10-12	265일	송부	청렴포털
11	2020청탁*****	2020-03-09	2020-10-23	228일	이첩	청렴포털
12	2020청탁*****	2020-03-09	2020-10-23	228일	이첩	청렴포털
13	2020청탁*****	2020-08-10	2021-03-25	227일	송부	청렴포털
14	2020청탁*****	2020-03-23	2020-10-23	214일	이첩	청렴포털
15	2020청탁*****	2020-07-08	2021-02-03	210일	송부	청렴포털
16	2020청탁*****	2020-03-31	2020-10-22	205일	송부	청렴포털
17	2020청탁*****	2020-07-07	2021-01-26	203일	송부	청렴포털
18	2020청탁*****	2020-06-19	2020-12-29	193일	송부	청렴포털
19	2020청탁*****	2020-10-14	2021-04-23	191일	송부	청렴포털
20	2020청탁*****	2020-09-21	2021-03-22	182일	송부	청렴포털
21	2020청탁*****	2020-05-29	2020-11-18	173일	송부	청렴포털
22	2020청탁*****	2020-05-19	2020-10-28	162일	송부	청렴포털
23	2020청탁*****	2020-12-07	2021-05-11	155일	이첩	청렴포털
24	2020청탁*****	2020-10-27	2021-03-25	149일	송부	청렴포털
25	2020청탁*****	2020-05-01	2020-09-24	146일	송부	청렴포털
26	2019청탁*****	2020-03-24	2020-07-14	112일	송부	청렴포털
27	2020청탁*****	2020-09-10	2020-12-30	111일	송부	청렴포털
28	2020청탁*****	2020-09-16	2021-01-05	111일	송부	청렴포털
29	2020청탁*****	2020-07-13	2020-10-29	108일	송부	청렴포털
30	2020청탁*****	2020-03-24	2020-07-02	100일	송부	청렴포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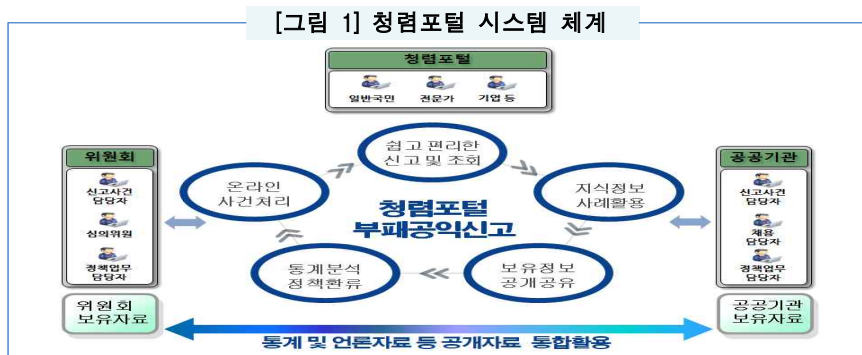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항 처리결과 청렴포털 등록 및 관리 미흡
소 관 부 서 부패방지국 ○○○○과, 심사보호국 ○○○○과
조 치 부 서 부패방지국 ○○○○과, 심사보호국 ○○○○과
내 용

1. 업무 개요

부패방지국 ○○○○과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8조, 제12조 및 「부패방지 권익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심사보호국 ○○○○과는 기존에 여러 시스템으로 분산되어 운영되어온 부패방지 정보시스템을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 제고, 업무담당자의 업무 효율성 개선 등을 위하여 [그림 1], [표 1]과 같이 부패방지 종합시스템인 ‘청렴포털’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표 1] 청렴포털 시스템 구축 추진경과

기간	단계별 주요사업	예산
'17. 5. ~ '17. 10.	청렴포털 BPR/ISP(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 계획)	4.4억원
'18. 6. ~ '19. 1.	(1단계) 국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편(간편 신고) 하고, 위원회 신고사건 접수, 처리 및 안전상정 기능 등 전면 보완	42억원
'19. 6. ~ '20. 2.	(2단계) 신고를 위원회뿐만 아니라 각급기관에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각급기관이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급	32억원
'20. 6. ~ '21. 2.	(3단계) 상담내용, 신고내용, 청렴도 조사, 언론 등 다양한 정보를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능 탑재	46억원

국민들은 [그림 2]와 같이 청렴포털을 이용하여 위반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고 처리결과 통지방식을 청렴포털, 이메일, 우편 중 하나 또는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건 담당자는 [그림 3]과 같이 청렴포털에서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기재하여 ‘신고자 통지(이첩·송부 사건의 경우 조사결과 통지)’를 입력함으로써 ‘청렴포털 시스템’ 상 사건처리가 완료된다.

[그림 2] 청렴포털 신고 화면(신고자 입력)

* 신고분야	간편신고(부패유형자등분류)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선택- ▼ - -	* 휴대전화번호	-선택- ▼ - -
직업	-선택- ▼	군무처	검색
이메일 주소	@	직접입력 ▼	
* 주소	주소검색 최근 사용한 주소 불러오기		
	추가 상세정보를 입력해 주십시오.		
처리결과 통지방식	☒ 청렴포털 ☐ 이메일 ☐ 우편 ※ 선택하신 방식으로 기간연장, 조사결과 등 신고 처리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통지방식으로 이메일을 선택하는 경우 이메일 입력은 필수입니다.		
전행단계 알림방식	☒ 문자메시지 ☐ 이메일 ※ 선택하신 통지방식으로 신고 진행사항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알림을 위해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림방식으로 이메일을 선택하는 경우 이메일 입력은 필수입니다.		

[그림 3] 청렴포털 신고자 통지 화면(조사관 입력)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부패방지국민익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같은 법 제12조제14호에 따른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7조에 따르면 ○○○○과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렴포털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통보 방법은 같은 지침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문서 등으로 통지하되 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 또는 청렴포털로 접수된 신고사건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거나 청렴포털에 입력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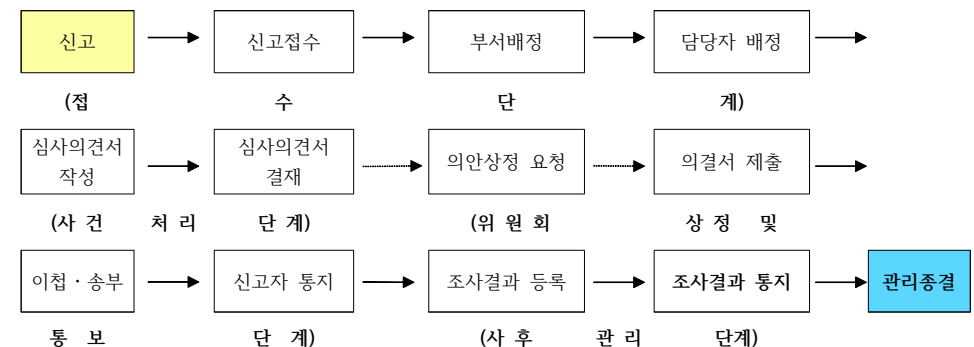
한편, 「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지침」 제1조에 따르면 청렴포털은 부패방지, 공익신고, 부정청탁 등 방지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되었으며,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국민

권익위원회는 청렴포털의 총괄운영기관으로서 청렴포털의 운영·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운영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제10조 따르면 청렴포털이 지원하지 않는 업무를 제외한 업무는 청렴포털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정보의 입력 또는 등록 등 청렴포털을 통한 업무처리는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하여야 하고, 제1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보를 입력 또는 등록한 후 그 정보를 원시자료 등과 대조하여 누락 및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청렴포털’ 시스템을 이용하여 부패방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반부패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garbage in, garbage out), 이를 위해서는 청렴포털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에 대한 적절한 품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와 ○○○○과는 [그림 4]와 같이 신고사항 처리 각 단계별(접수→사건처리→위원회 상정·통보→사후관리)로 청렴포털을 통하여 신고사건을 처리하여야 하며 당해 업무 담당자는 청렴포털에 처리 사항을 즉시 입력하여 청렴포털 시스템 상에서 업무처리 정보가 누락되거나 ‘실제 사건 처리일’과 ‘청렴포털 시스템 상 사건처리일’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청렴포털에 입력 또는 등록되어있는 정보를 점검하여 누락 등 오류가 있는 정보들을 정비하는 등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림 4] 청렴포털 업무처리 프로세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과가 감사 기간(2019. 10. 1. ~ 2021. 5. 31.) 동안 처리한 사건 중 사건처리를 완료한 후 신고자에게 문서로 처리결과를 통보하였음에도 [별표 1]과 같이 청렴포털 시스템에서 신고자 통지 처리를 ‘누락’하거나 [별표 2]와 같이 청렴포털 시스템에 신고자 통지 처리를 ‘지연 입력’하여 ‘사건 처리일’과 ‘신고자 통지일’ 차이가 100일 이상 나는 사건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별표 1] 사건들은 사건 처리가 완료되었음에도 청렴포털 시스템 상에서는 [그림 5]와 같이 ‘심사중’으로 조회되고 있어 신고자들에게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별표 1]과 [별표 2] 사건들은 실제 사건처리 현황이 청렴포털 시스템 상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는 등 정보의 완결성·정확성 부족으로 이를 활용한 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저하되어 부패방지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연계한 분석 등을 목적으로 구축된 청렴포털 시스템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

[그림 5] ‘신고자 통지’가 누락된 사건의 청렴포털 조회 화면

관계부서 의견 ○○○○과는 청렴포털 운영상 신고자 통지항목 입력을 할 필요가 있다면 조사관들이 이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겠으며, 행동강령 조사처리절차에 맞는 청렴포털 시스템 개편 또한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부서에게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답변을 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7조의 ‘그 처리결과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는 것은 신고사건의 처리결과(위반통보, 관계기관 송부 등)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는 의미로, 청렴포털에 ‘신고자 통지 항목’을 입력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7조는 신고자에게 통지방식은 같은 지침 제8조의2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8조의2제3항에 따르면 청렴포털로 접수된 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청렴포털에 입력하는 것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감사에서 지적한 신고사건은 신고자들이 처리결과 통지

방식을 ‘청렴포털’로 지정했었던 점(그림 2)와 같이 신고자는 처리결과 통지 방식을 ‘청렴포털’, ‘이메일’, ‘우편’ 중에서 선택 가능), 「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지침」 제10조는 청렴포털이 지원하지 않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청렴포털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렴포털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근거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축·운영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과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과는 이견 없이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청렴포털 사용자 교육 강화, 신고자 통지가 누락된 사건에 대한 정기적인 관련부서 통보, 청렴포털 시스템 개선 추진 등 청렴포털 상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정보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 및 ○○○○과장은 청렴포털 시스템상 누락되어 있거나 지연 입력되어 있는 정보를 실제 사건처리 현황에 맞게 수정하도록 하고(시정), 향후 청렴포털 시스템에 정보 입력이 누락되거나 지연 입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청렴포털 시스템 사용자 교육 강화, 청렴포털 시스템 등록 정보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실시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1] 청렴포털에서 ‘신고자 통지’ 입력 누락 현황

연번	접수번호	처리일자	심사의견	통지 입력일	통보방식
1	2019행강*****	20200401	위반통보	-	청렴포털
2	2019행강*****	20200401	위반통보	-	청렴포털
3	2019행강*****	20200616	위반통보	-	청렴포털
4	2019행강*****	20200514	위반통보	-	청렴포털
5	2020이의(행강)*****	20200320	기각	-	청렴포털
6	2020행강*****	20200715	위반통보	-	청렴포털
7	2020행강*****	20200616	위반통보	-	청렴포털
8	2020행강*****	20200825	위반통보	-	청렴포털
9	2020행강*****	20200825	위반통보	-	청렴포털
10	2020행강*****	20200805	위반통보	-	청렴포털
11	2020행강*****	20200805	위반통보	-	청렴포털
12	2020행강*****	20200805	위반통보	-	청렴포털
13	2020행강*****	20200805	위반통보	-	청렴포털
14	2020행강*****	20200617	위반통보	-	청렴포털
15	2020행강*****	20200619	위반통보	-	청렴포털
16	2020행강*****	20200825	위반통보	-	청렴포털
17	2020행강*****	20200825	위반통보	-	청렴포털
18	2020행강*****	20200827	위반통보	-	청렴포털
19	2020행강*****	20200912	위반통보	-	청렴포털
20	2020행강*****	20200912	위반통보	-	청렴포털
21	2020행강*****	20200827	위반통보	-	청렴포털
22	2020행강*****	20200827	위반통보	-	청렴포털
23	2020행강*****	20200925	위반통보	-	청렴포털
24	2020행강*****	20200925	위반통보	-	청렴포털
25	2020행강*****	20210226	위반통보	-	청렴포털
26	2020행강*****	20201211	위반통보	-	청렴포털, 이메일
27	2020행강*****	20201023	위반통보	-	청렴포털
28	2020행강*****	20201118	위반통보	-	청렴포털
29	2020이의(행강)*****	20210122	기각	-	청렴포털
30	2020행강*****	20201230	위반통보	-	청렴포털
31	2020행강*****	20201211	위반통보	-	청렴포털

32	2020행강*****	20201230	위반통보	-	청렴포털
33	2020행강*****	20210106	위반통보	-	청렴포털
34	2020행강*****	20210210	위반통보	-	청렴포털
35	2020행강*****	20210208	위반통보	-	청렴포털
36	2020행강*****	20210303	위반통보	-	청렴포털
37	2020행강*****	20210601	종결	-	청렴포털

[별표 2] 사건 처리일과 청렴포털상 신고자 통지 입력일간 100일 이상 차이발생 현황

연번	접수번호	사건 처리일자	신고자 통지 입력일	처리일부터 입력일까지 기간	심사의견	통보방법
1	2019행강*****	20191223	20210611	536일	종결	청렴포털
2	2019행강*****	20191223	20210610	535일	종결	청렴포털
3	2019행강*****	20200113	20210614	518일	종결	청렴포털
4	2019행강*****	20200113	20210614	518일	종결	청렴포털
5	2019행강*****	20200113	20210611	515일	종결	청렴포털
6	2020행강*****	20200207	20210614	493일	종결	청렴포털
7	2019행강*****	20200207	20210611	490일	종결	청렴포털
8	2019행강*****	20200212	20210609	483일	종결	청렴포털
9	2019행강*****	20200212	20210609	483일	종결	청렴포털
10	2019행강*****	20200212	20210609	483일	종결	청렴포털
11	2019행강*****	20200212	20210609	483일	종결	청렴포털
12	2019행강*****	20200212	20210609	483일	종결	청렴포털
13	2019행강*****	20200212	20210609	483일	종결	청렴포털
14	2019행강*****	20200212	20210609	483일	종결	청렴포털
15	2019행강*****	20200212	20210609	483일	종결	청렴포털
16	2019행강*****	20200212	20210609	483일	종결	청렴포털
17	2019행강*****	20200212	20210609	483일	종결	청렴포털
18	2019행강*****	20200219	20210611	478일	종결	청렴포털
19	2020행강*****	20200227	20210614	473일	종결	청렴포털
20	2019행강*****	20200228	20210610	468일	종결	청렴포털
21	2019행강*****	20200228	20210610	468일	종결	청렴포털
22	2019행강*****	20200228	20210610	468일	종결	청렴포털
23	2019행강*****	20200228	20210610	468일	종결	청렴포털
24	2019행강*****	20200228	20210610	468일	종결	청렴포털
25	2019행강*****	20200228	20210610	468일	종결	청렴포털
26	2019행강*****	20200228	20210610	468일	종결	청렴포털
27	2019행강*****	20200228	20210610	468일	종결	청렴포털
28	2019행강*****	20200228	20210610	468일	종결	청렴포털
29	2019행강*****	20200228	20210610	468일	종결	청렴포털
30	2019행강*****	20200228	20210610	468일	종결	청렴포털
31	2019행강*****	20200228	20210610	468일	종결	청렴포털

164	2019행강*****	20200106	20200922	260일	종결	청렴포털
165	2020행강*****	20201008	20210624	259일	종결	청렴포털
166	2020행강*****	20201014	20210629	258일	종결	청렴포털
167	2020행강*****	20201014	20210628	257일	종결	청렴포털
168	2019행강*****	20200114	20200922	252일	종결	청렴포털
169	2019행강*****	20200114	20200922	252일	종결	청렴포털
170	2019행강*****	20200115	20200922	251일	종결	청렴포털
171	2020행강*****	20201110	20210630	232일	종결	청렴포털
172	2019행강*****	20200204	20200922	231일	종결	청렴포털
173	2019행강*****	20200204	20200922	231일	종결	청렴포털
174	2019행강*****	20200204	20200922	231일	종결	청렴포털
175	2020행강*****	20201110	20210628	230일	종결	청렴포털
176	2020행강*****	20201110	20210628	230일	종결	청렴포털
177	2020행강*****	20201118	20210702	226일	종결	청렴포털
178	2020행강*****	20201118	20210701	225일	종결	청렴포털
179	2020행강*****	20201118	20210630	224일	종결	청렴포털
180	2019행강*****	20200212	20200922	223일	종결	청렴포털
181	2019행강*****	20200218	20200922	217일	종결	청렴포털
182	2019행강*****	20200218	20200922	217일	종결	청렴포털
183	2019행강*****	20200218	20200922	217일	종결	청렴포털
184	2019행강*****	20200219	20200922	216일	종결	청렴포털
185	2020행강*****	20201209	20210702	205일	종결	청렴포털
186	2020행강*****	20201211	20210701	202일	종결	청렴포털
187	2019행강*****	20200306	20200922	200일	종결	청렴포털
188	2020행강*****	20200306	20200922	200일	종결	청렴포털
189	2020행강*****	20200306	20200922	200일	종결	청렴포털
190	2020행강*****	20200722	20210203	196일	종결	청렴포털
191	2020행강*****	20201230	20210702	184일	종결	청렴포털
192	2020행강*****	20201230	20210701	183일	종결	청렴포털
193	2020행강*****	20210106	20210706	181일	종결	청렴포털
194	2020행강*****	20200326	20200922	180일	종결	청렴포털
195	2020행강*****	20200326	20200922	180일	종결	청렴포털
196	2020행강*****	20200326	20200922	180일	종결	청렴포털

197	2020행강*****	20200326	20200922	180일	종결	청렴포털
198	2020행강*****	20200410	20200922	165일	종결	청렴포털
199	2020행강*****	20200410	20200922	165일	종결	청렴포털
200	2020행강*****	20200410	20200922	165일	종결	청렴포털
201	2020행강*****	20210122	20210701	160일	종결	청렴포털
202	2020행강*****	20210122	20210701	160일	종결	청렴포털
203	2020행강*****	20210122	20210701	160일	종결	청렴포털
204	2020행강*****	20210122	20210701	160일	종결	청렴포털
205	2019행강*****	20200416	20200922	159일	종결	청렴포털
206	2020행강*****	20200416	20200922	159일	종결	청렴포털
207	2020행강*****	20210122	20210630	159일	종결	청렴포털
208	2020행강*****	20210129	20210706	158일	종결	청렴포털
209	2020행강*****	20210129	20210706	158일	종결	청렴포털
210	2020행강*****	20210129	20210705	157일	종결	청렴포털
211	2020행강*****	20210129	20210702	154일	종결	청렴포털
212	2020행강*****	20210129	20210702	154일	종결	청렴포털
213	2020행강*****	20200907	20210207	153일	위반통보	청렴포털
214	2020행강*****	20200907	20210207	153일	위반통보	청렴포털
215	2020행강*****	20200907	20210207	153일	위반통보	청렴포털
216	2020행강*****	20200907	20210207	153일	위반통보	청렴포털
217	2020행강*****	20200907	20210206	152일	위반통보	청렴포털
218	2020행강*****	20200912	20210207	148일	위반통보	청렴포털
219	2020행강*****	20210208	20210705	147일	종결	청렴포털
220	2020행강*****	20210208	20210705	147일	종결	청렴포털
221	2020행강*****	20210208	20210705	147일	종결	청렴포털
222	2020행강*****	20210208	20210705	147일	종결	청렴포털
223	2020행강*****	20210209	20210706	147일	종결	청렴포털
224	2020행강*****	20210129	20210623	145일	종결	청렴포털
225	2020행강*****	20200309	20200731	144일	이첩	청렴포털
226	2020행강*****	20200914	20210203	142일	종결	청렴포털
227	2020행강*****	20210215	20210702	137일	종결	청렴포털
228	2020행강*****	20200925	20210207	135일	위반통보	청렴포털
229	2020행강*****	20200925	20210207	135일	위반통보	청렴포털

230	2020행강*****	20200925	20210207	135일	위반통보	청렴포털
231	2020행강*****	20200925	20210206	134일	위반통보	청렴포털
232	2020행강*****	20200925	20210206	134일	위반통보	청렴포털
233	2020행강*****	20200925	20210206	134일	위반통보	청렴포털
234	2020행강*****	20200925	20210206	134일	위반통보	청렴포털
235	2020행강*****	20200925	20210206	134일	위반통보	청렴포털
236	2020행강*****	20200925	20210206	134일	위반통보	청렴포털
237	2021행강*****	20210303	20210707	126일	종결	청렴포털
238	2020행강*****	20210303	20210705	124일	종결	청렴포털
239	2020행강*****	20201008	20210206	121일	위반통보	청렴포털
240	2020행강*****	20201008	20210206	121일	위반통보	청렴포털
241	2020행강*****	20201008	20210206	121일	위반통보	청렴포털
242	2021행강*****	20210312	20210707	117일	종결	청렴포털
243	2021행강*****	20210312	20210706	116일	종결	청렴포털
244	2020행강*****	20210215	20210527	101일	위반통보	청렴포털

국 민 권 의 위 원 회

통보(모범사례)

제 목 불공정·불합리한 사규 정비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잘못된
업무관행 개선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

소 관 부 서 부패방지국

모 범 부 서 부패방지국 ○○○○○○과

모 범 내 용

부패방지국 ○○○○○○과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현행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평가하고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부패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과는 공공기관과 관련한 부패사건이 끊이지 않음에도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2019년 10월,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발굴·개선하여 부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직권으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가능하도록 [표 1]과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28조를 개정하였다.⁴⁾

[표 1]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신구조문 대비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4) 법률 개정 전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규 등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신 설 >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내부규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이에 따라 ○○○○○○과는 2020년 2월 공공기관 사규 전수점검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에는 187개 공기업 및 지방공사·공단, 2021년에는 99개 준정부기관, 2022년에는 209개 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87개 기관 15,719개의 사규를 점검하여 채용비리 우려가 있는 인사규정, 특정한 또는 단체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계약상대방인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계약규정 등 총 164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1,971건의 개선 권고를 하였다.

[표 2] 2020년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현황

구분	계 (187개 기관)	에너지분야 (18개 기관)	공향행안분야 (8개 기관)	교통분야 (10개 기관)	도시개발분야 (19개 기관)	관광레저분야 (14개 기관)	특정산업분야 (13개 기관)	시설환경분야 (105개 기관)
점검사규	15,719개	2,277개	816개	1,631개	2,676개	993개	1,138개	6,188개
권고유형	41개	18개	3개	6개	4개	5개	2개	3개
개선과제	164개	29개	21개	25개	29개	24개	16개	20개
권고	1,971개	60건	54건	137건	147건	96건	51건	1,426건

특히, 도시개발공사가 보유중인 임대주택의 공실을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임대주택 입주자격 세분화 등 합리적인 공사

(빈집) 운영 세부지침 마련 권고, 저소득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는 임대주택 관리비예치금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도시개발공사가 납부토록 권고, 공공기관이 자산으로 관리하는 상가 등을 임대하거나 자산 매각 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 시중은행 대출 금리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수신 금리를 고려해 정한 고시 이자율’(신규취급COFIX)을 적용토록 개선 권고,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상대방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전자인지세를 일부 공공기관에서 계약상대방에게 전액 부담시키고 있어 이를 계약상대방과 균등하게 부담토록 개선 권고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사규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2021년 4월 A공공기관 기관장이 자신의 측근을 비서실장으로 채용하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특별채용을 지시하였으나 인사담당자가 국민권의 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이유로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이는 2020년도 A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시 해당 공공기관 인사규정 중 ‘회장의 임기에 따라 비서직, 운전직을 회장이 재량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조건부 채용규정’이 인사비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이는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규정 정비가 실질적으로 부패 발생을 예방한 모범적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 공공기관 사규 주요 개선권고 사항

주요 개선권고 내용	
① 수의 계약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및 자의적 분할 발주 금지	⑦ 비위면직 취업제한자를 직원 채용결격 사유로 명문화
② 퇴직자 및 비위 면직자에 대한 수의 계약 금지 조항 마련	⑧ 자체재산 임대료 감면(면제) 기준의 투명성 강화
③ 승진제한 대상규정 명확화 및 제한 기간 강화	⑨ 투자심의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장치 마련
④ 조건부 채용 등 불명확한 채용방식의 개선	⑩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적정 계상 및 확인조항 명문화
⑤ 직원 특혜임차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⑪ 징계절차 진행대상의 승진 및 임원 징계 감경기준의 제한
⑥ 자산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이해 충돌방지 장치 마련	⑫ 퇴직 임원에 대한 불합리한 특별 공로금 지급 기준 개선

조치할 사항 부패방지국 ○○○○○○과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불공정·불합리한 사규 정비’는 이번 감사에서 모범사례로 선정, 위원회 전 부서에 공유·전파하여 업무추진에 참고토록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통보(모범 사례)**]

국 민 권 의 위 원 회

통보(모범사례)

제 목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통한 공직사회 청렴성 제고에 기여

소 관 부 서 부패방지국

모 범 부 서 부패방지국 ○○○○○과

모 범 내 용

부패방지국 ○○○○○과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제도의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근래 들어 공공기관의 가족채용 비리,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등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관련된 사안에 개입하거나 공직자로서의 지위나 권한 등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부패사건으로 인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공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과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대통령령, '18. 4. 17. 시행)을 통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공직사회에 선제적으로 도입하였으나, 행동강령은 행정부에만 적용되어 공공부문 전반에 통일적인 제도 운영이 어렵고 제재 수단이 징계로 한정되어 징계규정 적용이 곤란한 선출직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등 이해충돌을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

소리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⁵⁾, 「형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반부패 법령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패행위가 발생했음이 확인된 후에야 이를 처벌하는 사후적 제재방식을 취하고 있어 부패행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새로운 수단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과는 부패행위 발생 이전의 이해충돌 상황 자체를 규제하기 위한 사전 예방수단인 ‘이해충돌 방지’ 제도 도입과 더불어 새로운 윤리기준으로서의 규범성과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등을 통한 이행력 담보를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한다) 제정을 추진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을 필두로 관계 직원이 총력 대응하여 여야 정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법 제정을 위한 협의와 설득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법안이 처음 제출된 이후 8년만인 202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입법화 되었다.

이해충돌방지법안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세부 행위기준([표 1] 참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상담 절차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표 2] 참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표 1] 이해충돌 방지 세부 행위기준

구 분	관련 조문
신고 의무	①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및 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한 및 금지행위	①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② 가족 채용 제한 ③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⑤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5) ‘국민생각함’ 의견조사에서 국민 85%가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필요하다고 응답(2021. 3. 24. 민간협력담당관실 보도자료)

[표 2]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구분	위반행위	제재내용
징계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6)	징계처분
형벌	직무상 비밀·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27①)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병과 가능)
	공직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 취득한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한 자(§27②)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병과 가능)
	사적 이익을 위해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27③)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28①1)	3천만원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이 제12조제1항 각호의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28①2)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28②1)	2천만원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28②2)	
	직무관련자와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28②3)	
	직무관련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28②4)	1천만원
	공공기관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공직자(§28②5)	
	임용·임기 개시 전 업무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고위공직자(§28③)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28③)	

그 결과, 그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등과 같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 추구행위를 실효성 있게 제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청렴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이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다.

조치할 사항 부패방지국 ○○○○과에서 추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은 이번 감사에서 모범사례로 선정, 위원회 전 부서에 공유·전파하여 업무추진에 참고토록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통보(모범사례)**]

국 민 권 의 위 원 회

통보(모범사례)

제 목 적시성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으로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에 기여

소 관 부 서 국민권익위원회 ○○○○○○○○○○○○단

모 범 부 서 국민권익위원회 ○○○○○○○○○○○○단

모 범 내 용

○○○○○○○○○○○○○○○단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으로 국민적 공분과 더불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과 공정성 논란이 야기된 가운데 '21년 3월 징계 처분을 받은 후 LH에서 퇴직한 직원이 ○○○○○공사로 재취업했다는 채용비리 의혹이 발생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단은 ○○○○○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중 LH 근무경력자를 채용했거나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한 23개 기관을 선정해 채용 적정성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단은 채용 공정성이 심각히 의심되는 4개 공공기관을 [표 1]과 같이 적발하여 수사 의뢰를 하였고, [표 2]와 같이 공정채용 관련 지침 등을 위반한 11개 기관에 대해서는 징계 등 처분을 하도록 관리감독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관련내역을 통보하였다.

[표 1] 채용비위 의혹 적발사항

연도	기관명	적발사항
1	A공사	- '19.3월 경력직 직원 ○○○ 채용시, 채용공고문 상 상별내용을 필히 기재하고 미제출 하거나 허위기재시 불합격됨을 명시하였음에도 LH퇴직자 ○○○은 상별내용을 미제출하였으며, A공사는 관련 내용을 전근무지(LH)에 확인하지 않고 채용절차 진행 * ○○○은 전근무지에서 '건축'처분이 있었으나, 그 사항을 응시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응시자의 징계사유 및 징계내역에 따른 '공공기관 채용 결격사유' 해당 여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 - '19.3월 채용한 ○○○의 감사실장으로서의 승진심사(20.8)시, 심사항목 중 하나인 '직무적합성'을 두 개의 독립적인 평가요소(①직무적합성, ②조직관리능력 및 의사결정력)로 임의분리·평가하였고, 심사위원 구성시 당연직(3명) 외 2명을 모두 LH 근무경력자로 선정하여 특정인(○○○)에게 유리한 승진심사 환경을 조성
2	B진흥원	- '20.2월 기간제 직원 채용시, B진흥원 「임용규칙」 및 채용계획에 따라 60점 미만자는 불합격 처리하여야 함에도 57.4점을 받은 응시자 △△△는 면접전형 통과 후 예비합격자로 선정, 이후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로 최종합격
3	C공사	- '19.3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의 특별채용 금지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20.4월 C공사 사장의 수행비서 채용시 별도의 공고절차 없이 특별채용의 형식으로 □□□ 채용 * 채용된 □□□은 사장의 전 근무지 비서실에서 근무한 자로, 전임자는 5급 채용하였으나 □□□은 3급으로 채용하는 등 채용에서의 특혜 부여 및 공정채용 위반 의혹
4	D공사	- '15.4월 경력직 채용시 1차 내부 면접위원 ▲▲▲이 특정 은행 출신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고 심사표에 특정표시가 존재 - 2차 면접 전 작성된 1차 면접결과표에 인사담당이 손글씨로 2차 면접자의 특이한 신상 등을 기록하고 "○", "△", '두 줄 굵기' 처리 - 최종적으로 특정은행 출신 지원자 5명 중 3명이 최종합격

[표 2] 채용지침 주요 위반 유형

【주요 위반 유형】

① 블라인드 채용 절차 위반

* 블라인드 채용임에도 지원서에 사진부착, 학교명·소재지 등 작성하도록 요구

② 채용 가점 적용 관련 자체규정 근거 부재

* 자체 규정 등 별도의 근거없이 채용공고문에 우대조건 및 가점 부여

③ 면접 평가 시 상세항목 평가 없이 '총점' 평가

* 면접평가 시 평가항목은 있으나 항목별 배점 없이 종합점수만을 부여

④ 채용시험 심사위원 구성 부적정

* 채용대행업체 대표를 심사위원 위촉, 면접 외부심사위원 비중(50%) 미충족 등

⑤ 심사위원의 제척·회피규정 부재

* 자체규정상 제척·회피관련 기관 의무는 명시된 반면, 위원 스스로의 제척·회피를 규정하지 않음

⑥ 채용 관련 기록물 관리 부실

* 영구 관리대상인 채용서류중 심사자료(서류·필기·면접) 원본 파기

⑦ 공정채용 관련 지침의 자체 사규로의 적용 미흡

* 공정채용관련 지침 및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의 권고사항의 자체규정 미반영

더불어 관리감독부처인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수사 의뢰된 관련자에 대하여 즉시 업무에서 배제토록 하였고, 향후 검찰 기소 시 관련자와 공소장에 명시된 부정합격자에 대한 퇴출과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채용시 기회부여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또한, ○○○○○○○○○○○○○○○단에서는 금번 특별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적발에만 그치지 않고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표 3]과 같이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채용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3]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방안

① 우회적 특별채용 금지

○ (현 황) 일부 기관에서 비서 등 채용 시 특별채용을 합법화하고 채용공고 등을 생략하는 논리로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을 준용

<부적정 운영 사례>

○○공사는 채용계획 상에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한 후, 사장비서 채용 시 '공고절차를 생략'하고 특별 채용

○ (개선방향) 우회적 특별채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부 공공기관의 자체 인사규정 상에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준용 조항' 적용 시 구체적인 기준 마련

② 특별채용 시 감독기관과의 사전협의 명시

- **(현 황)** 감독부서에서 특별채용은 사전협의 사항인 제한경쟁채용이 아니라고 혼동하여 사전협의 미실시
 < 부적정 운영 사례 >
 △△공사는 '사장 수행 비서' 채용(특별채용) 관련 사전 감독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했으나, 감독부서에서는 해당 채용은 제한경쟁채용이 아니므로 공식 답변(협의)을 하지 않음
- **(개선방향)** 채용 관련 감독기관과의 사전협의대상을 공개경쟁채용을 제외한 모든 채용유형으로 확대

③ 재직 직원에 대한 '채용가점' 부여 금지

- **(현 황)** 일부 기관에서 재직직원이 기관 내 다른 채용(정규직, 상위직위 등)응시할 경우 법적 근거 없이 가점을 부여하는 '재직자 채용 가점' 제도 운영
 < 부적정 운영 사례 >
 ▽▽공사는 직원 채용 시 재직기간에 따라 공사 내 다른 채용직위 응시할 경우, 직원들에게 채용 전형 만점의 5~10%를 주는 재직자 가점 제도(횟수 제한 없음) 운영
- **(개선방향)** 공정채용 관련 규정상 법적근거가 불분명한 '직원 채용 가점제' 폐지하도록 개선

④ 정규직원·기간제 구분없이 14일 공고규정 적용

- **(현 황)** 일부 기관은 정규직원 외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공고 기간 단축 운영
 < 부적정 운영 사례 >
 ◎◎공사는 인사규정 상으로는 채용공고 기간을 14일 이상으로 설정하였으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공고 기간을 7일 혹은 단축할 수 있도록 차등
- **(개선방향)** 채용 공고 시 정규직원 외 비정규직 직원에 대하여도 14일 이상 공고 기간을 준수하도록 명문화

⑤ 응시서류 진위확인 위한 기관 검증절차 마련

- **(현 황)** 일부기관에서 근무경력 등에 대한 검증 절차 없이 응시자 제출서류로만 채용 진행
 < 부적정 운영 사례 >
 특별점검 대상 기관(23개) 중 5개 기관은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응시자가 제출

한 서류만으로 적격으로 인정 후 합격자 결정

- **(개선방향)** 이전 근무지 경력, 상벌사항 등 응시자 제출서류 관련 최종합격자 결정전 의무적으로 자체검증 하도록 제도 개선

조치할 사항 ○○○○○○○○○○○○○○○○단에서 추진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은 이번 감사에서 모범사례로 선정, 위원회 전 부서에 공유·전파하여 업무추진에 참고토록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통보(모범사례)]

국 민 권 의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업무 인계·인수 시 문서 ‘인계인수시스템’을 통한 관리
부적정

소 관 부 서 부패방지국, 청렴연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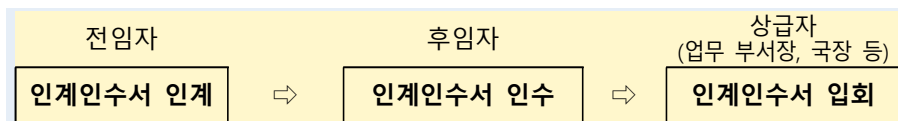
조 치 부 서 부패방지국, 청렴연수원

내 용

1. 업무 개요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업무가 바뀔 때에는 해당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한다. 전임자는 인계서를 작성하고, 후임자는 인계서의 내용을 확인 후 인수하며, 인계·인수자의 상급자(부서장, 국장 등)는 입회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1] 업무 인계·인수 흐름도



감사대상 기간(2019.10.~2021.5.) 부패방지국 5개과, 청렴연수원 2개과, ○○○○○○○○○○○○○단 등 8개 부서에서는 온나라 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85건의 인계인수서가 작성되었다. 인계인수서의 내용에는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인계·인수하는 업무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업무의 인계·인수) ①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시스템을 통해 인계·인수할 때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등에는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업무의 인계·인수) ①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아울러, 서식에 따라 인계자·인수자와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는 입회를 확인해야 한다.

[그림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해당부분 발췌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서명 또는 인)	
인수자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비고(이 남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기관장 및 부기관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2.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기관의 실정이나 인계·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업무 인계·인수 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제1항과 같은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온나라 ‘인계인수시스템’을 통해 인계·인수와 입회가 완료되어야 한다.

그러나, 감사대상기간(2019.10.~2021.5.) 동안 인계인수된 건에 대해 인계인수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이 완료되지 않은 건이 있었다.

[그림 3] 인계인수시스템 화면

인계자	인수자	입회자	상태
김	백	이	입회완료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인계자 김
인수자 백
입회자 이

[그림 4] 인수·인계·입회 완료 화면 예시

[그림 5] 인수·입회 미결상태 화면 예시

인계자	인수자	입회자	상태
김	김	백	인수요청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인계자 김
인수자
입회자

[그림 6] 입회 미결상태 화면 예시

인계자	인수자	입회자	상태
장	이	김;	입회요청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인계자 장
인수자 이
입회자

인계인수시스템 상 인계·인수·입회가 완결되지 않은 건수는 총 85건 중 30건(35.3%)으로, 인수⁶⁾단계 미결 11건, 입회단계 미결 18건, 기타 사유로 인계·인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1건이 있었다.

6) 인수가 완료되지 않으면, 입회가 진행될 수 없음

[표 1] 시스템 상 감사대상 기간(2019.10.~2021.5.) 인계·인수·입회 현황

부서별	인계인수 건수	인계인수 입회 완료 건수	소계	인수미결 건수	입회미결 건수	기타 (수기 작성 등)
합계	85 (100%)	55 (65.7%)	30 (35.3%)	11	18	1
○○○○○○과	5	4	1	1	-	-
○○○○○○과	15	15	-	-	-	-
○○○○○○과	13	11	2	1	1	-
○○○○○○과 (△△△△△과 2건 포함)	18	13	5	-	4	1
○○○○과	10	2	8	4	4	-
○○○○과	13	8	5	2	3	-
○○○○과	3	1	2	-	2	-
○○○○○○○○ ○○○○단	8	1	7	3	4	-

(자료 : 온나라 인계인수시스템 부패방지국 인계인수 확인 결과)

관계부서 의견 부패방지국 및 청렴연수원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각 부서에 전파하여 직원전보 등으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 시 부서장이 온나라시스템을 통해 인계·인수가 완료되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단 ○○팀장은 앞으로 직원들이 업무 변경 등으로 업무를 인계·인수·입회할 때는 온나라 인계·인수시스템을 통해 인계·인수·입회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국 민 권 의 위 원 회

주의요구

제 목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
소 관 부 서 부패방지국, 청렴연수원
조 치 부 서 부패방지국, 청렴연수원
내 용

1. 업무 개요

부패방지국 및 청렴연수원 각 부서에서는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등에 따라 부서운영 및 소관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고,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및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 집행지침 등”이라 한다)에 따르면 일반수용비(210-01목)는 사무용품의 구입과 인쇄비 등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비 및 사용료 등에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및 이용료는 임차료(210-07목)로, 비서실 및 부서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기타운영비(210-16목)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와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내부직원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업무추진비(240목)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지침」(Ⅲ. 목별 지침)

1. 일반수용비(210-01목)

1. 적용대상

- ☐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비
- ☐ 회의참석사례금,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초빙강사료 등

4. 임차료(210-07목)

1. 적용대상

- ☐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및 임대료

8. 기타운영비(210-16목)

1. 적용대상

- ☐ 과운영비
- ☐ 비서실운영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Ⅲ. 비목별 지침)

4. 업무추진비(240목)

4-1. 사업추진비(240-01)

- 가. 적용범위: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4-2. 관서업무추진비(240-02)

- 가. 적용범위: 각 관서의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직원간담회 등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또한, 「예산 집행지침 등」에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또는 일반수용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Ⅲ. 비목별 지침)

1. 운영비(210목)

1-1. 일반수용비(210-01목)

차. 위원회 참석비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서면심사 10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대상기간(2019.10.~2021.5.)의 예산과목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7개 부서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회의·행사 또는 내부직원 간담회·회의 등 관서업무수행 목적의 다과와 음식을 일반수용비 또는 기타 운영비로 구입하거나, 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에게 일반수용비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등 총 354건, 31,467,170원⁷⁾을 예산과목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1]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 현황

부서명	건수	집행액	집행 예산과목	적정 예산과목
○○○○○○과	4건	1,266,340원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24건	3,808,580원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소계	28건	5,074,920원	-	-
○○○○○○과	9건	1,368,780원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과	2건	132,100원	일반수용비	임차료
	3건	367,980원	일반수용비	여비
	8건	2,033,660원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소계	13건	2,533,740원	-	-
○○○○과	4건	756,970원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 ○○○○단	12건	939,100원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과	66건	6,250,870원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과	222건	14,542,790원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합계	354건	31,467,170원	-	-

(자료: 일반지출 서류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서류 확인 결과 재구성)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업무추진비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건이 345건 (97.5%)으로 가장 많고 기타운영비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건이 4건(1.1%), 여비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건이 3건(0.8%)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추진비로 사용해야 할 다과나 음식을 일반수용비로 잘못 사용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집행 담당자들이 관련 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파악되며, 향후 교육을 통해 정확한 규정 숙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부서 의견 부패방지국 및 청렴연수원에서는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교육 및 전파하고,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 ○○○○○과장, ○○○○○과장, ○○○○○과장, ○○○○○○○○○○○○○단 ○○팀장, ○○○○○과장, ○○○○○과장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여 예산과목에 부합하지 않게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7) 카드 일괄 결제로 사무용품이나 문구류 등 일반수용비로 구매 가능한 물품도 일부 포함된 금액임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특근매식비 부적정 지급

소 관 부 서 부패방지국

조 치 부 서 부패방지국

내 용

1. 업무 개요

부패방지국 및 청렴연수원 각 부서에서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초과근무 2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매월 특근매식비를 지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근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무 개시 전·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되, 정규근무시간(09시~18시) 중에는 지급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근무지외 출장 등으로 식비를 지급 받은 자는 예산의 중복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5. 특근매식비(210-05목))

가. 지급대상자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 개시 전·후 2시간 근무하는 자에게 특근매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정규근무시간(9~18시) 중에는 특근매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 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 받은 자는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대상기간(2019.10.~2021.5.)의 특근매식비 지급내역을 점검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5개 부서에서 초과근무 2시간 미충족자 및 출장식비 지급 대상자에게 특근매식비를 지급하는 등 총26건, 165,000원의 특근매식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1] 특근매식비 부적정 지급내역

부서명	부적정 지급건수	부적정 지급액	부적정 사유
○○○○○○과	2건	13,000원	초과근무시간 미충족(1건) 출장식비와 중복 지급(1건)
○○○○○○과	3건	19,000원	초과근무시간 미충족(3건)
○○○○○○과	8건	52,000원	초과근무시간 미충족(8건)
○○○○과	4건	27,000원	초과근무시간 미충족(4건)
○○○○○○○○ ○○○○단	9건	54,000원	초과근무시간 미충족(9건)
계	26건	165,000원	

(자료: 관서운영경비 출납서류 및 e사람 시스템 확인 결과 재구성)

특근매식비 지급 시에는 대상자의 출퇴근 기록 및 초과근무시간을 면밀히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대상부서는 이를 소홀히 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서 의견 부패방지국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잘못 지급된 특근매식비를 반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 ○○○○○○과장, ○○○○○○과장, ○○○○과장, ○○○○○○○○○○○○○○○단 ○○팀장은 부적정하게 지급된 특근매식비를 반납 조치하고(시정),

규정에 따른 초과근무 2시간 충족 여부와 출장식비 지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부적정하게 특근매식비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국 민 권 의 위 원 회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출장식비 부적정 지급
소 관 부 서 부패방지국, 청렴연수원
조 치 부 서 부패방지국, 청렴연수원
내 용

1. 업무 개요

부패방지국 및 청렴연수원 각 부서에서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자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Ⅷ .1 .가에서는 위 규정상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란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항목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Ⅷ .1 .가 조정사유)

- 1)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이때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는 해당 공무 여행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 항목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출장 중 업무추진비 또는 특정업무경비로 식사를 한 경우에는 예산의 중복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출장식비를 감액하여 지급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대상기간(2019.10.~2021.5.) 출장식비 지급현황을 점검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4개 부서에서 출장 중 업무추진비 또는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하여 식사를 하였음에도 출장식비를 감액 지급하지 않는 등 총13건, 83,240원의 출장식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1] 출장식비 부적정 지급 내역

부서명	부적정 지급건수	부적정 지급액	부적정 사유
○○○○○○과	6건	36,620원	출장 중 특정업무경비로 식사(6건)
○○○○○○○○○ ○○○○단	3건	19,980원	출장 중 특정업무경비로 식사(3건)
○○○○과	3건	19,980원	출장 중 업무추진비로 식사(3건)
○○○○과	1건	6,660원	출장 중 업무추진비로 식사(1건)
계	13건	83,240원	

(자료: 여비지급내역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서류 확인 결과 재구성)

출장 중 업무추진비 및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하여 식사를 한 경우 출장비 정산 시 사용내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출장식비를 감액하여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대상부서는 이를 소홀히 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서 의견 부패방지국 및 청렴연수원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부적정하게 지급된 출장식비를 반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 ○○○○○○○○○○○○○○○단 ○○팀장, ○○○과장, ○○○과장은 부적정하게 지급된 출장식비를 반납 조치하고 (시정),

업무추진비 또는 특정업무경비 사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부적정하게 출장식비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주의요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규정 미준수

소 관 부 서 청렴연수원

조 치 부 서 청렴연수원

내 용

1. 업무 개요

부패방지국 및 청렴연수원 각 부서에서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액이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2조의2 및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에 따르면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용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해야 하며, 서명란이 없는 경우에는 여백을 이용하여 서명해야 한다.

아울러, 카드 영수증에 실명서명이 없거나, 사용자를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서별 회계처리 담당자가 정확한 사용자를 알 수 있도록 서명을 보완해야 한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4. 업무추진비(240목))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2조의2(정부구매카드 사용자의 실명 서명의무)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용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카드전표 등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카드전표 등에 서명란이 없는 경우에는 여백을 이용하여 서명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II. 공통지침)

카드사용영수증에 사용자의 실명서명이 출력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자를 알아보기 어렵게 서명되어 있을 경우에는 부서별 회계처리 담당자가 정확한 사용자를 알 수 있도록 서명을 보완하여야 한다(여백에 사용자명 별도 기재)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대상기간(2019.10.~2021.5.)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점검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내역 중 총5건에 대하여 증빙서류에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1]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명단 미첨부 내역⁸⁾

부서명	사용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사용금액	명단첨부
○○○○과	2019.11.25.	제4차 청렴교육강사 보수교육 오찬	750,000원	X
	2019.12.5.	제2기 국민권익 소통과정 만찬	880,000원	X
	2019.12.9.	인천 ○○고 청렴문화캠프 운영	630,000원	X
	2019.12.10.	부천 ○○고 청렴문화캠프 운영	703,000원	X
	2019.12.13.	증평 ○○고 청렴문화캠프 운영	910,000원	X

(자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서류 확인 결과 재구성)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 영수증에 실명 서명이 누락되거나, 실명이 아닌 직위만 기재한 경우가 총54건 확인되었다.

8) '제4차 청렴교육강사 보수교육 오찬'과 관련하여 집행한 업무추진비 증빙서류에는 사용자 명단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별도로 보고한 교육운영 결과보고서에는 첨부하였고, 청렴문화캠프 운영 3건과 관련하여 집행한 업무추진비 사용자 명단은 증빙서류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파일로 보유하고 있음을 소명

[표 2] 업무추진비 사용 영수증 서명 누락내역

부서명	예산과목	건수	사용금액	비고
○○○○과	관서업무추진비(240-02)	46건	944,560원	사용자 실명 서명 누락
○○○○과	사업추진비(240-01)	8건	597,600원	

(자료: 관서운영경비 출납서류 확인 결과 재구성)

위와 같이 업무추진비 사용의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은 예산의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서 의견 청렴연수원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업무추진비를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할 경우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관련 업무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과장, ○○○○과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후 반드시 사용자가 영수증에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국 민 권 의 위 원 회

주의요구

제 목 일상감사를 거치지 않은 계약추진

소 관 부 서 부패방지국 ○○○○○○○과

조 치 부 서 부패방지국 ○○○○○○○과

내 용

1. 업무 개요

부패방지국 및 청렴연수원 각 부서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일상감사규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 계약업무 등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일상감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건당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시설공사계약 및 각종 용역계약 또는 건당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제조(인쇄) 및 그 밖의 계약을 대상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대상에 해당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일상감사 의뢰서에 예산서 등 참고서류와 결재원안을 첨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직전에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일상감사규정」

제3조(대상 업무)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상 감사를 실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집행사항

가. 건당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시설공사계약 및 각종 용역계약

나. 건당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제조(인쇄) 및 그 밖의 계약

제4조(일상감사의 의뢰 등) ① 제3조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이하 "감사대상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뢰서에 예산서 등 참고서류와 결재원안을 첨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직전에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결재권자가 사무처장 이상인 경우에는 감사대상 부서의 실·국장(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이 결재한 직후에 의뢰하여야 한다.

관계부서 의견 ○○○○○○과는 향후 계약업무 추진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일상감사 의뢰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절차상 일상감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계약업무 추진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일상감사 의뢰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일상감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대상기간(2019.10.~2021.5.)에 추진된 계약을 대상으로 일상감사 의뢰 여부를 점검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고 계약을 추진한 사례가 총3건 확인되었다.

[표 1] 일상감사 미의뢰 계약 현황

부서명	계약일	건명	계약금액	일상감사 대상여부
○○○○○○과	2020.5.6.	청탁금지법 과태료 재판 판례집 제작	39,710천원	○
	2020.5.18.	청탁금지법 해설집 및 매뉴얼 제작	34,947천원	○
	2021.4.16.	청탁금지법 과태료 재판 판례집 제작	39,809천원	○

(자료: 부서별 계약현황 및 일상감사 의뢰현황 확인 결과 재구성)

상기 3건의 계약을 사후 검토한 결과, 사업의 타당·적법성, 가격 설정 및 계약방법 등에 위법사항이나 기타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상감사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 민 권 의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청렴연수원 자료실 도서 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소 관 부 서 청렴연수원

조 치 부 서 청렴연수원

내 용

1. 업무 개요

청렴연수원은 교육생과 연수원 직원들의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대출 등을 위해 자료실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자료실에는 총 229권의 도서를 구비하고 있으며 매년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하여 [표 1]과 같이 신규 도서를 구입하고 있다.

[표 1] 신규 도서구입 현황('19년 ~ '21년 6월 현재)

연번	도서명	구입일	구입금액	예산과목
1	검사내전	2019. 4. 2.	15,000원	일반수용비
2	참모로 산다는 것	2019. 4. 2.	19,000원	일반수용비
3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2019. 4. 2.	15,000원	일반수용비
4	교육, 게임처럼 즐겨라	2019. 5. 21.	27,000원	일반수용비
5	트렌드 코리아 2020, 밀레니얼-Z세대 크렌드 2020	2020. 1. 15.	31,500원	일반수용비
6	역사의 쓸모,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2020. 9. 2.	27,900원	일반수용비
7	왜요 그 말이 어때서요, 티모시의 유산	2020. 10. 27.	19,350원	일반수용비
8	심판, 채근담 젠가, 공정하다는 착각	2021. 6. 21.	59,670원	일반수용비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물품관리법」 제19조,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은 관계법령의 준수와 함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하고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에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연 1회 그 소관 물품에 대한 정기재물조사(定期在物調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렴연수원은 예산으로 구입한 국가 물품인 도서 보관 및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청렴연수원은 도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원활한 열람·대출이 이루어지고 도서의 분실 또는 훼손 방지 등을 위하여 ‘대출대장’ 등을 구비하여 도서 대출이력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렴연수원은 ‘대출대장’ 등을 구비하지 않고 있어 도서의 현황 파악이 어렵고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열람·대출받은 자에 대한 이력확인이 어려워 변상 등의 조치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등 자료실 도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관계부서 의견 청렴연수원은 이견 없이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자료실 내 ‘대출대장’을 마련하고, 연 1회 정기재물조사 시 청렴연수원 자료실 내 도서를 포함하여 분실, 훼손 도서 등을 파악하는 등 자료실 도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자료실 내 ‘대출대장’을 마련하고 연 1회 이상 도서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분실, 훼손 도서 등을 파악하는 등 자료실 도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